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항,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등록·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3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 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500점 만점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허가서 교부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각서 등 필요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의한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2절 재허가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5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500점 만점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절 변경허가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콘텐츠사업 신고·등록·승인

제1절 콘텐츠사업 신고·등록

제15조(신고절차)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인 경우 신고증)
2. 주주현황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①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요건)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신규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

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구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구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콘텐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제18조(변경신고·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대표자명
2. 상품(서비스명)
3. 콘텐츠 공급분야
4.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책임자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주요시설의 소재지

7. 해당사업의 최대액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②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2.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제2절 콘텐츠사업 승인

제19조(승인절차)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표 3>의 “콘텐츠사업 승인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 : 원본 1부, 사본 20부

3. 주주현황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②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해 이미 승인받은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약식)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서(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해 이미 승인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승인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승인심사기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승인심사방법)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500점 만점에서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변경승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텐츠 공급분야

2. 당해 사업의 최대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장 보 칙

제25조(심사비용 부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또는 승인 심사 시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용, 심사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실비를 계상하여 허가 또는 승인 신청법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

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를 없
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를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허가신청 기간)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최초의 제공사업 허가신청
기간은 2008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로 하되 2008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

I. 개요

- 허가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
- 허가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명시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II. 신청서류 구성

- 허가신청서류는 공문,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부속서류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

III. 세부작성요령

1.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의 정관, 법인의 등기부등본, 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 관련 서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를 준비

2.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 신규허가

①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 사업목적과 내용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부합되어야 하고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보장을 포함하여 작성
- 보편적 접근성 구현과 이용자의 불만처리, 개인정보보호,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층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청자 위원회,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사회·문화적 기여방안을 상세하게 서술

②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 연도별 콘텐츠 확보계획과 콘텐츠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의 단위 구성·운영 방안, 프로그램 차별화 방안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
- 방송영상산업발전과 관련하여 방송영상 기술, 산업 및 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 계획을 자세하게 작성(예 : 수신료 지급비율, 플랫폼간 덤핑경쟁 방지 등)
- 공정경쟁 관련 내부절차 확보계획,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 제공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술(예 : 결합서비스의 공정성)

④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시장분석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고도화 및 전국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소요(임차)설비 및 콘텐츠·설비투자계획과 투자자금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요금체계를 증명하는 근거자료 준비
 - 조직 구조의 구체성과 인력 구성방법, 전문인력 개발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서술
- ⑤ 재정적 능력
-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서를 작성
- ⑥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구성, 서비스 품질 목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전송시설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
 - 타 전기통신설비와의 연동, 운용보존 및 장애 시 대비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2) 재허가

- ① 신규허가 심사사항을 참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
- ② 허가 당시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허가 당시 사업계획의 이행 충실성을 증명하는 설명 자료를 작성
 -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
 - 운영실적 및 이용자 의견청취, 향후계획 설명 자료를 작성

-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처분의 내용, 횡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횡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

IV. 제출요령

1.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사업계획서는 300쪽 이내로 작성하되 쪽수를 일련번호로 표기
2. 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별표 2>

제공사업 허가심사기준

I. 신규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8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보편적 접근성 구현	비계량(40)
	1-②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비계량(40)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100)	2-① 콘텐츠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40)
	2-② 실시간방송프로그램 단위 구성의 우수성	비계량(40)
	2-③ 방송영상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20)
3.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80)	3-① 유료방송 및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3-② 공정경쟁 관련 내부절차 확보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3-③ 방송통신 서비스 연계제공의 적절성	비계량(2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80)	4-①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4-② 서비스 고도화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4-③ 소요(임차)설비추정, 콘텐츠·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4-④ 요금체계의 적정성	비계량(10)
	4-⑤ 인력 및 조직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5. 재정적 능력(80)	5-① 수익성	계량(20)
	5-② 안정성	계량(20)
	5-③ 성장성	계량(20)
	5-④ 투자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비계량(10)
	5-⑤ 신용등급	계량(10)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 계획의 적정성(80)	6-① 시스템구성, 서비스 품질 목표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비계량(30)
	6-② 전송시설의 적정성 및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비계량(30)
	6-③ 타 전기통신설비와의 연동, 운용보존 및 장애 시 대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20)
계		500

※ 관련근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4항

II. 재허가 심사사항 및 배점

심 사 사 항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60
2.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70
3.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60
4.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60
5. 재정적 능력	60
6.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60
7. 허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0
8.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여부	60
계	500

※ 관련근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별표 3>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

I. 개 요

- 신규 승인신청법인은 승인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보도·홈쇼핑 전문과 종합편성 구분)
- 승인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분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기관 등을 명시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II. 신청서류 구성

1. 승인신청서류는 공문,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 부속서류 순으로 작성(신규신청자)
 - 계획서의 요약문은 10쪽 이내로 작성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적시
 -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고 분량은 최소화
- ※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승인신청서(약식)에 작성

2. 상기 승인신청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20부를 제출한다.

III. 세부작성요령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① 보도전문

- 임원·편성책임자·주요주주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의지와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업 참여의 적합성과 건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특히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및 청소년,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실현 방안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 위원회,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작성
- 기타 사회·문화적 기여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홈쇼핑전문

- 사업목적의 타당성, 신청법인 구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신청인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업종의 건전성, 납세의 성실성, 공익사업의 실적, 경영의 건전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서술
- 소비자 보호 관련 사전·사후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간 공정경쟁 방안 및 육성계획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자세하게 기술

③ 종합편성

- 방송의 공적책임의 실현 의지 및 가능성, 신청인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건전성을 자세하게 서술
-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 특히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및 청소년,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청자 위원회,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근거자료도 함께 제시
- 기타 사회·문화적 기여방안을 상세하게 기술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① 보도전문

- 콘텐츠 기획·편성계획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수급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콘텐츠 확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
- 보도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독립성을 극대화하고, 선정성·편파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근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

② 홈쇼핑전문

- 콘텐츠 기획·제작·편성계획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구성·운영을 상세하게 기술
- 콘텐츠 제공방법 및 확보계획은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을 근거자료와 함께 사업목적과 편성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

③ 종합편성

- 콘텐츠 기획·제작·편성계획과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작성
- 콘텐츠 확보 계획 및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 (예: 보도·교양·오락 등 프로그램 편성의 다양성 및 자체편성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원성,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
- 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독립성을 극대화하고, 선정성·편파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① 보도전문

- 시설투자 및 자금운용·조달과 추정재무제표, 사업성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서술

- 이사회 구성·운영, 책임경영 방안, 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경영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 조직구조와 인력구성,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은 관련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
-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② 홈쇼핑전문

- 시설투자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설명
-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경영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케팅 계획, 물류체계 등에 대한 관련 자료제시와 함께 체계적으로 작성
- 조직 구성 및 인력수급계획 내용에는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계획과 예상 매출액·경상이익을 포함하는 중장기 사업발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서술

③ 종합편성

- 시설투자 및 자금운용·조달과 추정재무제표, 사업성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서술
- 이사회 구성·운영, 책임경영 방안, 임원·편성책임자의 전문성, 내·외부 환경을 고려한 경영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 조직구조와 인력구성,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은 관련자료와 함께 상세하게 작성
- 프로그램의 다양성·다원성·완성도,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독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보도·홈쇼핑 전문 및 종합편성 공통)

- 재정적 수익성·안정성·성장성과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 송신망 구축 및 능력, 유지 보수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
- 콘텐츠 제작 관련 기술개발 계획 및 인력 확보·양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① 보도전문

- 보도전문채널의 중장기 발전방안, 방송영상산업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홈쇼핑전문

-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 유통산업 지원계획,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시기 및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종합편성

- 종합편성 콘텐츠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방송영상산업발전을 위한 기여방안,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시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IV. 제출요령

1. 제출서류는 A4 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는 300쪽 이내로 작성하되 쪽수를 일련번호로 표기
2. 계획서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별표 4>

콘텐츠사업 승인 심사기준

I. 보도 전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2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실현가능성 1-②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 1-③ 시청자 권익 실현 1-④ 사회문화적 기여도	비계량(30) 비계량(30) 비계량(30) 비계량(3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20)	2-① 콘텐츠 기획·편성 계획의 적정성 2-② 콘텐츠 제작·수급 능력 2-③ 콘텐츠 확보 계획의 타당성	비계량(40) 비계량(40) 비계량(40)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100)	4-①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4-②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③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4-④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비계량(20) 비계량(30) 비계량(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	5-① 재정적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5-②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의 우수성	계량(50) 비계량(50)
5. 방송발전 지원계획(60)	6-① 방송영상산업육성, 지원계획의 우수성 6-②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대한 기여 의지	비계량(30) 비계량(30)
계		500

※ 관련근거 : 「방송법」 제10조제1항

II. 홈쇼핑 전문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00)	1-①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공익성 1-② 신청인 또는 주요 주주의 건전성 1-③ 소비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1-④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육성계획의 적정성	비계량(30) 비계량(20) 비계량(30) 비계량(2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20)	2-① 콘텐츠 기획·제작·편성계획의 우수성 2-② 콘텐츠 제공방법 확보계획의 적정성 2-③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40) 비계량(40) 비계량(40)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100)	3-① 자금조달 운영계획의 적정성 3-② 경영계획의 투명성 확보 방안 3-③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3-④ 조직 구성 및 인력수급계획의 적정성 3-⑤ 중장기 사업발전계획의 우수성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	4-① 재정적 수익성·안정성·성장성 4-②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의 우수성	계량(50) 비계량(50)
5. 방송발전 지원계획(80)	5-①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5-② 유통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5-③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 5-④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대한 기여 의지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계		500

※ 관련근거 : 「방송법」 제10조제1항

Ⅲ. 종합편성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심사항목	배 점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120)	1-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1-② 신청인 또는 주요주주의 건전성 1-③ 시청자 보호계획의 우수성 1-④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1-⑤ 사회문화적 기여도	비계량(30) 비계량(20) 비계량(30) 비계량(20) 비계량(2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120)	2-① 콘텐츠 기획·제작·편성계획의 우수성 2-② 분야별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2-③ 콘텐츠 확보계획 및 능력의 타당성	비계량(40) 비계량(40) 비계량(40)
3.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 계획의 적정성(100)	4-① 자금조달·운영계획의 적정성 4-② 경영투명성 확보 방안 4-③ 마케팅 계획의 우수성 4-④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의 효율성	비계량(30) 비계량(20) 비계량(30) 비계량(20)
4.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	5-① 재정적 수익성·안정성·성장성 5-② 콘텐츠 제작시설·운영계획의 우수성	계량(50) 비계량(50)
5. 방송발전 지원계획(60)	6-①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6-②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적정성 6-③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대한 기여 의지	비계량(20) 비계량(20) 비계량(20)
계		500

※ 관련근거 : 「방송법」 제10조제1항

<별 첨>

<별지 제1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신청서-----	26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27
<별지 제3호 서식>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	28
<별지 제3-1호 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29
<별지 제4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신규·재) 허가서-----	30
<별지 제5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31
<별지 제6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33
<별지 제7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	34
<별지 제8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필증-----	35
<별지 제9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신청서-----	36
<별지 제10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증-----	37
<별지 제11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서-----	38
<별지 제12호 서식>	최다액출자자 변경등 신고서-----	39
<별지 제13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40
<별지 제14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신규)-----	41
<별지 제15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기승인)---	42
<별지 제16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서-----	43
<별지 제17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44
<별지 제18호 서식>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45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1. 법인명 :

2. 납입자본금 규모 :

3. 주식소유비율

구성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1)	주식소유비율	유형 2)	외국인 3)		비고 4)
			주주명	지분율	
계	100%				

- 1) 성명 또는 명칭란에는 구성주주의 성명과 법인의 명칭을 기입할 것
- 2) 유형란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정부투자기관(정부소유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 소유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 소유비율 %)·외국법인·비영리법인·개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표시할 것
- 3)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 및 지분율을 기재할 것
- 4) 비고란에는 구성주주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들을 표시할 것

※ 허가신청법인은 1% 이상을 소유한 구성주주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외국인 주주의 경우에는 전부 명시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

1. 법인명 : (지분율 : %)

2. 결산일 :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수익성	총자산 순이익률 1)			
안정성	부채비율 2)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3)			
신용평가등급				

1) $(\text{순이익} / [\text{기초자산} + \text{기말자산}] / 2) \times 100$

2) $(\text{총부채}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총부채 = 고정부채 + 유동부채

3) $[(\text{당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 \text{전기매출액}] \times 100$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별지 제3-1호 서식>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

□ 법인명 :

(단위:백만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대차대조표항목	총자산				
	총부채 1)				
	자기자본 2)				
손익계산서항목	매 출 액 3)				
	순이익(손실)				

1) 총부채 = 고정부채+유동부채

2) 자기자본은 자본총계(자본조정내용 포함)를 의미

3) 매출액은 순매출액을 의미

첨부 : 감사보고서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감사회계법인의 확인필 자료)
세무조정계산서 사본(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상기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확인자 : ○○회계법인 대표 (인)

담당사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신규·재) 허가서

허가번호

법인명(상호)

성명(대표자)

주 소

사 업 권 역

허 가 조 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제3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운영실적서				
법인명(상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허가번호		허가일자		
소재지(주된 사무소)		사업권역		
사업기간	사업기간			
	휴업기간			
가입자현황 (최근3년간)	년	년	년	
	명	명	명	
운영현황	서비스 제공현황 (최근 3년)	채널	양방향서비스	주문형비디오콘텐츠
		채널	종	편
	인프라 투자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투자
		원	원	원
경영실적(최근3년)				
구분	수입	비용	수익	증감
년도				
년도				
년도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필증

신고번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콘텐츠 공급분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인]

<별지 제10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등록증			
법인명(상호명)		전화번호	
사업자명(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대출자자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운용개시(예정)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위원회 (인)			

<별지 제16호 서식>

승인번호 제 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승인서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대출자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된사무소		
	주요시설 소재지		
콘텐츠개요	콘텐츠유형		
	공급분야		
운용개시(예정)일		승인유효기간	
승인조건			
<p>「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방송통신위원회 인</p>			

